##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662 발의연월일: 2020. 9. 9.

발 의 자:서영교·김영호·송옥주

김민철 • 박성준 • 송기헌

이성만 • 남인순 • 양정숙

김승원 • 윤미향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 중 「민법」상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유족급여를 똑같이 나누어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친모가 수십 년 전 이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녀를 양육해오던 친부와 유족급여를 동일하게 지급받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양육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는 급여 지급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, 유족에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1조 등).

법률 제 호

##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제4호다목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한다.

제11조 중 "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,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"를 "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주로 부양·양육한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지급한다.
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순위자 경합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급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①・② (생 략)	제3조(정의) ①・② (현행과 같
<u>《신 설》</u> ③· <u>④</u> (생 략)	응) ③ 제1항제4호다목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군 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한다. ④ · ⑤ (현행 제3항 및 제4항
제11조(같은 순위자의 경합)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,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 설>	과 같음) 제11조(같은 순위자의 경합) ①